#### [서식 예]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(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)



##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

채권자 ㅇㅇ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무자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# 1. 집행권원의 표시

위 당사자간 귀원 2000가소000 구상금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정본

1.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

금 ○○○원(집행권원상의 채무전액)

## 신 청 취 지

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### 신 청 이 유

- 1.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.
- 2.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0. 0. 00. 확정되었는바, 그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3. 그러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합니다.

# 첨 부 서 류



1.	확정된 이행권고결정정본	1통
1.	채무이행최고서(내용증명우편)	1통
1.	주민등록표초본(채무자)	1통
1.	송달료납부서	1통

2000. 0. 0.

위 채권자 〇〇〇 (서명 또는 날인)

제출법원	·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들 생물 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: 채무자의 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(민사집행법 제70조 제3항) ·명시기일 불출석, 재산목록의 제출 거부, 선서 거부,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: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(민사집행법 제70조 제3항) ·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(민사집행법 제21조).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70조
· 등재 및 등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(민사 다만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. ·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조 제2항)			여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
비 용	・인지액: 1,000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・송달료: 당자자수×1회 우편료×5회분		
기 타	<ul> <li>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(민사집행법 제70조 제2항)와 채무자의 주소(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)를 소명하는 자료(민사집행규칙 제31조 제2항)를 내야 함.</li> <li>·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등재신 청을 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, 명시기일 불출석,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등본을, 거짓의 재산목록제출을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, 불기소처분(기소유예),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임.</li> </ul>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총칙